

# 김제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의 안	2004
번 호	- 28

제출년월일 : 2004. 6.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 1. 제정이유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또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라북도에 대회를 유치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지원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2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 (안 제3조)
- 지원위원회 기능 (안 제5조)
  -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및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지원사항 (안 제8조)
  - 출연금의 출연,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등

##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협조 공문[기획10000-145(2004. 3. 29)]
  -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 표준 조례안
  - 입법예고(2004. 5. 10~5. 31) : 특기사항 없음

# 김제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김제시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설치·운영과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또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설치) 김제시에 대회유치 및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지원위원회 구성) ①지원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25명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지원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수행한다.  
④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원위원회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및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에 관한사항 심의·의결
2. 대회 유치와 관련한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
3. 기타 대회 유치 및 대회 개최시 필요한 사항

**제6조(간사)**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며 간사는 체육담당이 된다.

**제7조(수당·여비 등)** 회의 및 유치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  
는 김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항)** 시장은 대회 유치활동 및 대회 조직위원회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연금의 출연
2. 공무원의 파견
3. 공유재산의 대부
4. 기타 유치활동 및 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